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57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유용원 · 박수영 · 김상훈
이달희 · 한기호 · 김성원
서지영 · 김예지 · 주호영
유의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 유지와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적정 군급식 단가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물가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식의 질 유지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장병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정 군급식 단가의 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군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군급식 단가의 산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군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u> <u>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군급식 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u>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군급식 단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